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30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평창군 레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 나. 관내 대규모 어드벤처 타워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유산조성과 주변 관광시설인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기대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설치·명칭 및 위치(안 제4조)
- 다.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이용 관련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마.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준용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04조, 제139조 및 제144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9조
- 3)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
- 4) 「관광진흥법」 제67조
- 5) 그 밖에 법령 등의 규정

나. 예산조치 : 2022년 1회 추경에 운영비(138백만원) 반영계획

※ [붙임3]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예고결과(2021. 8. 25. ~ 2021. 9. 14.) 의견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범위 미포함(기획실-12096, 2021. 9. 2.)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2096, 2021. 9. 2.)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결과 통보(가족복지과-33881, 2021. 9. 1.)에 의거,
개선사항 반영 제출(올림픽유산과-3104, 2021. 9. 10.)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관광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관광객의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체험시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가. 운동 종목: 체력단련장
 - 나. 시설 형태: 가상체험 체육시설
2. “스포츠·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이란 스포츠 및 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04조, 제139조 및 제144조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9조
 -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
 - 라. 「관광진흥법」 제67조
 - 마. 그 밖에 스포츠·관광과 관련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명칭 및 위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등에게 스포츠·관광 욕구의 지속적 충족과 그 체험기회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레포츠(leisure sports) 스카이다워(sky tower)
2. 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1번지 알펜시아 크로스 컨트리센터 일원

제5조(업무 및 조직) ① 체험시설은 그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보 및 안내
2.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3. 이용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
4.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관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 및 시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체험시설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충원·복무·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거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 및 휴무일) ① 군민과 관광객 등은 제7조의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무일 외에는 제9조의 제한·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그 날에 한정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이용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체험시설의 이용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음주·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4. 관련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5. 그 밖에 관리책임자(직원을 포함한다)가 설명하는 이용방법,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군 및 체험시설의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7조(이용기간 및 시간 등) ① 체험시설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체험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시부터 17:00시 까지

2. 토요일·공휴일: 09:00시부터 18:00시 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체험시설 입구의 적합한 곳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그 이용권을 발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료와 이용권의 문안·규격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이용 개시시각 30분 전부터 그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체험시설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이용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같음할 수 있다.

1. 이용기간, 이용 및 매표시간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감면대상자 및 이용제한·제외대상자
4. 해당 시설의 홍보·안내 및 이용방법
5. 운용규정 중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및 제외)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때
2. 본인, 다른 이용자 또는 체험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3. 흥기,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한 때
4. 제6조제2항 외의 사람. 다만,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
6.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법인·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해당 위탁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스포츠·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관광 자원 등의 보존·관리 및 개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사업비 지원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체험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또는 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체험시설의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이용료의 감면대상자(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비 고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그 자녀 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만, 65세 이상 68세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아.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50/100 감경	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의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24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를 셋 이상 구성하고 있는 가구 나. 군민 및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고

1. 아동·청소년: 12세(제9조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9세로 한다) 이상 19세 미만
2. 어른: 19세 이상 65세(제9조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68세로 한다) 이하
3. 단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4조(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체력단련장
시설 형태	가상체험 체육시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제5조(업무 및 조직) 제8조(이용료 등) 및 제10조(위탁운영) 등
- 시설 체험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비용 발생
- 시설 체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 체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군비 부담
- '22년부터 발생하는 시설 체험 이용료의 수입은 군 세입으로 처리
- 위탁운영 시 위탁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관광진흥법」 제 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관광자원 등의 보존·관리 및 개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운영비 추계 결과, '22년~'26년 사이 매년 138백만원에서 150백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
- 체험시설 이용료는 군 세입처리
- ※ 사업별 세부내역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및 인건비·운영비 산출내역 참조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충당하고자 함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01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50	150	200	200	200	900
시설체험이용료	150	150	200	200	200	900
세 출	138	138	147	147	147	717
인건비	111	111	120	120	120	582
운영비	27	27	27	27	27	135
기본재산						
재원 조달	138	138	147	147	147	71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8	138	147	147	717
	지방세	138	138	147	147	717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간 세입예산(체험시설이용료) 산출

* 운영수입금(체험시설이용료) 1인 평균 10,000원 기준

- '22~'23년도 10,000원 × 60명(1일) × 25일 × 10월 = 150,000,000원

- '24~'26년도 10,000원 × 80명(1일) × 25일 × 10월 = 200,000,000원

※ 연간 균 세출예산(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 참고자료 참조

[참고]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137,580	
	소 계	111,060	
인건비	시설유지관리인력	111,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운영(1명) 및 안전요원(3명) ▪ 기본급 : 70,000원×260일×4명 = 72,800천원 ▪ 주휴수당 : 70,000원×52일×4명 = 14,560천원 ▪ 휴일근로수당 : 105,000원×13일×4명 = 5,460천원 ▪ 4대보험부담금 : 380,000원×12월×4명 = 18,240천원
	소 계	26,520	
일반수용비	사무용 비품구입	6,000	▪ 500,000원 × 12월 = 6,000천원
	전기안전관리대행	3,600	▪ 300,000원 × 12월 = 3,600천원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720	▪ 60,000원 × 12월 = 720천원
	복합기 임차료	3,600	▪ 300,000원 × 12월 = 3,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6,000	▪ 500,000원 × 12월 = 6,000천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600	▪ 50,000원 × 12월 = 6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6,000	▪ 500,000원 × 12월 = 6,000천원